

# 대만의 흥궈주식 매매 심사준칙에 대한 고찰

고재종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동 심사준칙의 개요 및 체계

1. 개요
2. 본 준칙의 체계

## III. 동 심사준칙의 구체적인 내용

1. 흥궈주식의 상장 신청의 조건
2. 추천 증권회사
3. 흥궈주식의 상장 절차
4. 흥궈주식의 거래 개시 및 정보 공시
5. 그레타이 매매의 정지 및 중지
6. 위법의 처리

## IV. 맺는 말

### [ 특집 ]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신 외국법제정보는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5호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6호 기술·문화·산업간의 연계와 융합

제7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제8호 중소기업의 회생간소화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금년 7월 1일부터 21개의 신성장기업<sup>1)</sup>을 대상으로 평균 매출 286억 원, 순익 14억 원으로 코넥스(Korea New Exchange, KONEX)시장이 개장되었다.<sup>2)</sup> 코넥스시장이란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체계를 지원,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코스닥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이 대만에서는 흥궤주식시장(emerging stock market)이다. 동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이상 앞선 2002년 1월부터 시장이 개설되어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히 안정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흥궤시장의 당초 설립의 취지는 주관기관이 증권거래소에서 미상장(上市)된 주식의 거래 시 발생하는 많은 폐해를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sup>3)</sup> 그 효과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대만에서는 흥궤시장의 상장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 규정에 따른 심사, 승인 및 거래개시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이 되는 법이 「그레타이 매매 센터 증권회사 영업소 흥궤주식 매매 심사준칙(財團法人中華民國證券櫃檯買賣中心證券商營業處所買賣興櫃股票審查準則)」<sup>4)</sup>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코넥스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청구, 상장 승인, 거래개시 등 법률에 의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따라서 이하에서는 동법의 소개를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21개사는 대주이엔티, 랩지노믹스, 미디어나, 베셀, 비나텍, 비엔에스미디어, 스탠다드팜, 아이티센시스템즈, 아진엑스텍, 에스에이티, 에스엔피제네틱스, 에프앤가이드, 엘엔케이바이오메드, 엘로페이, 웹솔루스, 이엔드디, 태양기계, 테라텍, 퓨얼셀파워, 피엠디아카데미, 하이로닉 등이다[<http://blog.daum.net/shbaik6850/16546721>, 2013. 6.30].
- 2) 이날 개장 직후 시가총액은 206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된 11개 종목을 포함한 코넥스시장 시가총액은 현재 2067억원을 기록 중이다. 현재 시가총액 1위는 퓨얼셀로 1067억 원에 이른다. 아진엑스텍(672억 원) 엘로페이(100억 원) 에프앤가이드(84억 원) 이엔드디(60억 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70109372359158&outlink=1>, 2013. 7. 1].
- 3) 예를 들면, 증권거래소에서의 미상장 회사의 지하거래, 가주식(假股票)의 발행, 가공(空中)거래 및 동 금전을 흡수하는 가회사(假公司) 등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4) <http://www.selaw.com.tw/scripts/NewsDetail.asp?no=G0100713>, 2013. 5. 15.
- 5)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2013. 3. 22에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과 업무규정을 개정하였고[[http://www.shinkim.com/upload\\_files/newsletter/SHIN&KIM\\_IPO\\_Legal\\_Update\\_201305\\_kor.pdf](http://www.shinkim.com/upload_files/newsletter/SHIN&KIM_IPO_Legal_Update_201305_kor.pdf), 2013. 6. 27], 코넥스 관련 입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 6.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3681>, 2013. 6. 27]. 나아가 동년 7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되었다[<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307020332>, 2013. 7. 10]. 이에 따라 조만간 코넥스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II. 동 심사준칙의 개요 및 체계

### 1. 개 요

동 심사준칙은 대만의 「증권회사 영업소 유가증권 매매 관리 방법(證券商營業處所買賣有價證券管理辦法)」<sup>6)</sup> 제8조의 규정<sup>7)</sup>에 따라 최초 43개 조문으로 2001년 10월 12일 증권교자(證櫃交字) 제37192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3년 4월 9일에 이루어졌다. 동 심사준칙에 대한 주무기관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行政院金融監督管理委員會)<sup>8)</sup>이며(동법 제2조), 증권의 발행인은 본 심사준칙에 따라 발행한 보통주식의 증권회사 영업소에서의 상장 매매(이하 홍콩주식)를 재단법인 중화민국 증권 그레타이 매매 센터(이하 본 센터)에 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홍콩주식의 그레타이 매매, 매매 정지, 매매중지의 신청 내지 신고 및 홍콩주식의 그레타이 매매 기간에 있어서 발행인의 의무에 대하여는 주무기관의 법령에 따라서 규정된 것 또는 외국의 발행인이 등기소재지의 국가(투자지주회사<sup>9)</sup>에 속하는 회사의 피투자회사<sup>10)</sup>의 등기 소재지를 포함)의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 준칙이 적용된다.

### 2. 본 준칙의 체계

동 심사준칙은 최초 4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총9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은 총칙 부분(제1조-제5조), 제2장은 발행인의 신청조건(제6조-제8조), 제3장 추천증권회사(제9조-제15조), 제4장 상장 절차(제16조-제25조), 제5장 그레타이

6) <http://www.selaw.com.tw/Scripts/Query4A.asp?FullDoc=all&Fcode=G0100702>, 2013. 6. 26.

7) 동법 제8조라 함은 “證券櫃檯買賣中心應訂定證券商營業處所買賣有價證券審查準則，報請本會核定之”를 말한다.

8) <http://www.fsc.gov.tw/ch/>, 2013. 7. 10.

9) 투자지주회사란 투자를 주요한 업무로 해, 피투자회사에 직접적 또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지배를 운영 목적으로 하는 발행인을 말한다(동 준칙 제4조 제3호).

10) 피투자회사란 다음의 피투자회사를 말한다. ① 투자 지주회사가 50%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모든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하거나 또는 50% 이상 출자하는 각 피투자회사, ② 투자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50%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모든 발행주식을 간접 보유하거나 또는 50% 이상 출자하는 각 피투자회사, ③ 투자 지주회사가 50%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모든 발행주식을 직접 및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 보유하거나 또는 50%이상 출자하는 각 피투자회사를 말한다(동 준칙 제4조 제4호).

매매개시 및 정보의 공시(제26조-제37조), 제6장 그레타이 매매의 정지 및 중지(제38조-제41조), 제7장 상장 비용(제42조-제46조), 제8장 위법 취급(제47조-제49조), 제9장 부칙(제5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제7장과 제9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Ⅲ. 동 심사준칙의 구체적인 내용

#### 1. 흥궤주식의 상장 신청의 조건

##### 1) 국내 발행인의 경우

국내의 발행인이 주식을 그레타이 매매 센터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sup>11)</sup> 다음의 조건이라 함은 ① 공개 발행회사일 것, ② 증권회사와 지도(指導) 계약<sup>12)</sup>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③ 2개사 이상의 추천 증권회사<sup>13)</sup>의 서면에 의한 추천이 있을 것,<sup>14)</sup> ④ 본 센터의 소재지에 주식 사무의 취급을 대행하는 주식 사무 대리 기구 또는 주식 사무 부서를 설치하고 있을 것,<sup>15)</sup> ⑤ 모집에 의한 모든 주권 및 채권은 전자화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레타이 매매 센터에 상장할 수 있다(동 준칙 제6조 1항). 나아가 증권회사, 선물업자, 금융업자 및 보험업자는 목적 사업의 주무 기관으로부터

11) 동 심사준칙 제6조 제1항; 그레타이 매매 시장과 집중시장 주식매매 제도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http://www.otc.org.tw/ch/service/sotck\\_info/comparison/market\\_comparison.php](http://www.otc.org.tw/ch/service/sotck_info/comparison/market_comparison.php), 2013. 7. 10].

12) 발행인이 증권회사에게 그레타이 매매시장 상장에 관한 사항의 의뢰에 대해 증권회사와 계약한 것을 말한다(동 심사준칙 제4조 제1호).

13) 추천 증권회사란 발행인과 체결한 지도 계약에 있어서의 추천 증권회사를 말한다(동 심사준칙 제4조 제2호).

14) 다만, 그 중의 1개사를 주관사 증권회사 그 이외의 회사를 협력 증권회사로 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관사 증권회사보다 최근 1개월의 「재무 업무 중요사항 체크 리스트(檢査表)」를 제출하여야 한다(동 심사준칙 제6조 제1항 제3호 후단).

15) 주식 사무의 취급을 대행하는 주식 사무 대리 기구 또는 주식 사무 부서에 대해, 중화민국 집중보관결산소(集中保管決算所,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원에 해당)에 의하여 일정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6조 제2항); 집중보관결산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만집중보관결산소주식유한회사 정관(臺灣集中保管結算所股份有限公司章程)을 참조[<http://www.rootlaw.com.tw/LawArticle.aspx?LawID=A040390051014300-1010824>, 2013. 7. 10].

동의서를 취득한 다음 주식을 홍콩주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본 센터는 해당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 2) 외국발행인의 경우

외국 발행인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통주를 그레타이 매매 센터에 상장할 수가 있다. 다음의 조건이란 ① 외국의 법률에 근거해 설립 등기된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중화민국 지역과 중국 대륙 지역과의 인민 관계 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sup>16)</sup>」의 관련 규정에 위반하지 않고,<sup>17)</sup> 「외국 발행인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과 발행과 관련된 처리 준칙(外國發行人募集與發行有價證券處理準則)<sup>18)</sup>」에 따라 주식의 공개 발행을 신청하는 자일 것, ② 발행한 기명주식은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③ 증권회사와 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2개사 이상의 추천 증권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추천되어 있을 것,<sup>19)</sup> ⑤ 본 센터의 소재지에 주식 사무의 취급을 대행하는 주식 사무 대리 기구 또는 주식 사무 부서를 설치하고 있을 것,<sup>20)</sup> ⑥ 중화민국 내에서 거주 또는 등기하고 있는 1명 이상의 소송 비소송대리인을 지명하고 있을 것, ⑦ 일정한 사항의 준수를 승낙할 것,<sup>21)</sup> ⑧ 모

16)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Q0010001>, 2013. 5. 9.

17) 단, 대륙지역의 인민,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지배능력을 가져야 하며, 주관기관의 특별허가(專案許可)를 취득하여야 한다(동 심사준칙 제7조 제1항 제1호).

18) <http://www.selaw.com.tw/scripts/NewsDetail.asp?no=G0100035>, 2013. 5. 15.

19) 다만, 그 중의 1개사를 주관사 증권회사, 그 외의 회사를 협력 증권회사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관사 증권회사보다 최근 1개월의 「체크 리스트(檢査表)」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앞의 주14 참조).

20) 위의 ⑤에서의 주식 사무의 취급을 대행하는 주식 사무 대리 기구는 집중보관결산소에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 주식의 사무의 취급에 관한 인원 및 설비는 「공개발행 주식회사 복무 처리 준칙」(公開發行股票公司股務處理準則)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증명, ㉡ 직근 3개 년도에 있어서, 집중보관결산소의 조사를 받은 후에, 서면으로 제시된 개선 제안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는 사항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동 심사준칙 제7조 제2항).

21) 일정한 조건이란 ㉠ 중화민국 증권거래법(證券交易法) 및 관련 법령 정책의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 발행인은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 회계사 또는 전문기구로 하여금 본 센터가 지정하는 조사 범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 센터에 제출한 사실과 관련 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 ㉢ 홍콩시장에 등록된 주식은 주식거래 계좌의 대체 방식(帳簿劃撥方式)에 따라 교부되었다는 사실, ㉣ 주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회사 정관 또는 조직의 서류 내에 증보 내지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승낙을 할 것을 말한다(동 심사준칙 제7조 제1항).

집에 의해 발행되는 주권 및 채권은 전자화 형태로 되어 있을 것,<sup>22)</sup> ⑨ 흥케주식과 관련된 그레타이 매매 계약의 체결은 중화민국 법률을 준수할 것,<sup>23)</sup> 마지막 ⑩ 증권거래소법 제14조의 6(임금보수위원회의 설치)<sup>24)</sup> 및 그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임금보수위원회(薪資報酬委員會)를 설치할 것이라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동 심사준칙 제7조 제1항).

### 3) 주식 상장을 신청한 자의 의무

발행인이 흥케주식을 그레타이 센터에서 매매를 위하여 상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지도 추천 증권회사가 동 주식을 인수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주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재단법인 증권투자자와 선물거래 보호센터의 인수 구입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1,000주를 유보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수 구입의 조건은 지도 추천 증권회사와 동등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8조 제1항).

동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식은 본 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부 보유 주식 또는 본 센터 특별 안건으로 심사 비준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 추천 증권회사는 그레타이 매매를 위한 흥케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그레타이 매매를 위한 흥케주식 총수의 3%가 50만주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저 50만주를 인수하여야 한다. 만약 50만주를 초과하여 150만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레타이 매매 주식 총수의 3%를, 150만주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150만주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조 제2항). 위의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각각의 지도 추천 증권회사는 10만주 이상을 인수 구입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만약 위에서 발행인이 증권회사인 경우 그 각 지도 추천 증권회사의 인수할 주식수는 그레타이 매매를 하려는 주식 총수의 1% 또는 50만주(이 중 낮은 총주수로 한다)를 상회하지 못한다(동조 제4호). 나아가 위의 경우 지도 추천 증권회사<sup>25)</sup>의 인수 주식에 대해 지도 추천 증권회사는 위 제1항

22) 물론 그 등기 소재지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 심사준칙 제7조 제1항 제8호 단서 조항).

23) 해당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소송)을 위한 관할법원도 중화민국 타이베이 법원으로 한다(동 심사준칙 제7조 제1항 제9호).

24) 證券交易法 第14-6條(薪資報酬委員會之設置)의 내용은 “股票已在證券交易所上市或於證券商營業處所買賣之公司應設置薪資報酬委員會；其成員專業資格,所定職權之行使及相關事項之辦法，由主管機關定之。前項薪資報酬應包括董事,監察人及經理人之薪資,股票選擇權與其他具有實質獎勵之措施”을 말한다[<http://www.selaw.com.tw/scripts/Query1B.asp?no=1G010000114-6>, 2013. 7.10].

25) 이익 준비금 및 자본 준비금의 증자 및 현금 증자 등의 대체에 의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동 심사준칙 제8조 제5항 본문).

의 발행인과 그 관계인, 그 내부자 및 앞에서 언급한 자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인 사이에 환매를 하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불가’라는 약정을 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5항).

## 2. 추천 증권회사

### 1) 추천 증권회사의 자격

본 심사준칙 제6조 1항 제3호 및 제7조 1항 제4호에서 언급되는 지도 추천 증권회사<sup>26)</sup>는 증권 인수업자(證券承鎖商), 증권 중개업자(證券經紀商) 및 증권 자영상(證券自營商)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외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① 중화민국 증권상업동업공회(證券商業同業公會)<sup>27)</sup>의 등기회원이어야 하고, ② 증권회사 관리 규칙(證券商管理規則) 제23조의 규정<sup>28)</sup>에 부합하여야 하고, ③ 증권회사 관리 규칙 제59조<sup>29)</sup>에 규정되어 있는 리스크 베이스 자기자본 비율이 200% 이상에 달할 것, ④ 발행인과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증권회사이어야 하고, 주관사 추천 증권회사는 주관사 지도 증권회사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동 심사준칙 제9조 제1항).

또한 전 항에서의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주관사 추천 증권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다)

26)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자문인제도에 해당한다. 지정자문인제도는 상장예비기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 대상 주식판매 주선 등을 관할하고, 상장 후에 공시, 신고대리업무, 유동성공급자 호가 제출의무 등을 한다[이안초, “지정자문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가천법학 제6권 2호(2013. 6.30), 217-253쪽 참조].

27) 우리나라 금융투자협회(과거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합병하여 설립된 기구)에 해당된다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8%88%EC%9C%B5%ED%88%AC%EC%9E%90%ED%98%91%ED%9A%8C, 2013. 7. 10]. 하지만 대만의 ‘증권상업동업공회’는 과거 ‘증권업협회’와 같은 역할로 동 협회의 목적은 증권회사 상호간의 친목과 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고자 하였다. ‘증권상업동업공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http://www.csa.org.tw/, 2013. 5. 15].

28) 동 규칙은 1988년 11월 24일 재정부 증권관리위원회 대재증 2자(台財證2字) 제09467호 전문 46개 조문으로 제정 발효된 것이며, 동 규칙 제23조는 “證券商辦理本法第七十一條第二項先認購後再行銷售或於承銷契約訂明保留一部分自行認購之包銷有價證券者, 應具備下列之條件: ① 財務狀況符合法令規定, ② 最近半年內未曾受主管機關依本法第六十六條所爲之停業處分.”라고 규정하고 있다[http://www.selaw.com.tw/Scripts/Query4B.asp?FullDoc=所有條文&Lcode=G0100801, 2013. 3. 26].

29) 제59조에 의하면, “證券商除由金融機構兼營者另依有關法令規定外, 非經本會核准, 其自有資本與經營風險約當金額應維持適當比率. 前項之適當比率, 稱自有資本適足比率, 其計算方式爲合格自有資本淨額除以經營風險之約當金額. 外國證券商在臺分公司如其母國總公司已依其當地國法令之規定計算自有資本適足比率, 且將在臺分公司之經營風險列入計算, 並符合標準者, 得檢送該等符合自有資本適足比率標準之資料, 向本會申請免適用本章規定. 惟除報經本會核准者外, 每月仍應依第二十一條第四項規定之方式申報其總公司之自有資本適足比率等資訊[위의 사이트].

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① 직근 3년 간에 있어 주식의 상장 또는 그레타이 매매시장 상장의 제1회 신청 또는 현금 증자 또는 전환 가능한 사채를 취급한 경험이 있는 주관사 증권회사이어야 하며, 주무 기관에 의한 허가를 취득하고 그레타이 매매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안건이 3건 이상 또는 그 인수 부문의 책임자 및 최저 3명의 인수 업무 담당자가 상기의 인수 안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자격을 가지고 있고 등기한 인수 담당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나아가 추천 증권회사와 발행인이 다음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센터는 그 흥취주식의 그레타이 매매 추천 안건을 거부할 수가 있다. 다음의 사항이라 함은 ① 추천 증권회사와 발행인이 상호 간에 서로 유가증권의 그레타이 매매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 평가 보고의 평가자일 것, ② 증권회사 관리 규칙 제26조에 열거되고 있는 사항일 것,<sup>30)</sup> ③ 동일한 기업 그룹에 속할 것을 말한다(동 심사준칙 제10조).

하지만 지도 추천 증권회사는 추천 주식의 그레타이 매매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사임할 수가 없다. 만약 사임 후에 2개사 이상의 지도 추천 증권회사(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를 포함한다)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동 심사준칙 제11조 제1항). 더불어 지도 추천 증권회사가 사임을 할 때에는 사임 신청서를 본 센터에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출을 받은 본 센터는 그에 대한 사임 허가일을 기재한 회답서를 보낸다. 지도 추천 증권회사의 신분은 이 회답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상실하게 된다(동조 제2항).

## 2) 증권회사의 참가 신청

증권회사는 발행인의 주식이 그레타이 매매 개시일부터 1개월 후에 서면으로 본 센터에

30) 제26조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이란 ① 任何一方與其母公司, 母公司之全部子公司及其子公司管理之創業投資事業, 合計持有對方股份總額百分之十以上者, ② 任何一方與其子公司派任於對方之董事, 超過對方董事總席次半數者, ③ 任何一方董事長或總經理與對方之董事長或總經理為同一人, 或具有配偶, 二親等以內親屬關係者, ④ 任何一方股份總額百分之二十以上之股份為相同之股東持有者, ⑤ 任何一方董事或監察人與對方之董事或監察人半數以上相同者. 其計算方式係包括該等人員之配偶, 子女及其二親等以內之親屬關係者在內, ⑥ 任何一方與其關係人總計持有他方已發行股份總額百分之五十以上者. 但證券承銷商為金融機構或金融控股公司之證券子公司時, 如其母公司, 母公司之全部子公司及其子公司管理之創業投資事業總計持有發行公司股份未逾發行公司已發行股份總額百分之十, 且擔任發行公司董事或監察人席次分別未逾三分之一者, 不在此限. ⑦ 雙方依相關法令規定, 應申請結合者或申報後未經公平交易委員會禁止結合者, ⑧ 其他法令規定或事實證明任何一方直接或間接控制他方之人事, 財務或業務經營者를 말한다[위의 사이트].



대하여 해당 주식의 추천 증권회사를 위하여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서의 증권회사는 본 심사준칙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증권회사는 발행인의 주식 3만주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동 심사준칙 제12조 제1항). 만약 증권회사가 위의 1항의 규정에 따라 홍콩주식을 그레타이 매매 개시 후에 추천 증권회사의 가입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 동의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사임을 할 수가 없다(동조 제2항). 나아가 추천 증권회사가 사임을 할 때에는 사임 신청서를 본 센터에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에 대한 효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회답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발생한다(동조 제2항, 제3항).

### 3) 추천증권회사의 추천 자격 취소

추천 증권회사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그 추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이란 ① 증권 인수업자, 증권 중개업자 또는 증권 자영상 중 어떤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주무기관에 의하여 증권거래법(證券交易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다만 증권거래소 주식유한회사에 의한 영업세칙(臺灣證券交易所股份有限公司營業細則)<sup>31)</sup>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혹은 본 센터에 의한 업무 규칙 등의 관련 규칙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이상의 처분 내지 조치를 받았을 경우, ③ 리스크 베이스 자기자본 비율이 3개월 연속하여 150%에 달하지 않은 경우, ④ 본 준칙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추천 증권회사의 추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동 심사준칙 제13조).

### 4)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의 의무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主辦輔導推薦證券商)는 추천 홍콩주식의 그레타이 매매 기간에 있어 본 심사준칙 제6조 제4항 또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크 리스트(檢査表)」를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동 심사준칙 제14조 제1항).<sup>32)</sup> 또한 동 증권회사는 본 센터가 지정하는 인터넷 정보 신고 시스템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발행인의 「체크 리스트」를

31) 동 세칙은 1983년(중화민국 81년) 11월 19일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2년 10월 31일에 이루어졌다 [http://www.laws.taipei.gov.tw/taipei/lawsystem/showmaster02.jsp?LawID=A040390051021400-20111031, 2013. 7. 12].

32) 본 센터는 부정기적으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동 심사준칙 제14조 1항 후문).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체크 리스트에 열거되어 있는 중대한 사건<sup>33)</sup>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는 본 센터가 지정하는 인터넷 정보 신고 시스템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를 받고, 그 결과는 위의 신고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 3항).

### 5) 지도 추천 증권회사의 변경

발행인의 흥궤주식의 그레타이 매매를 위하여 상장된 기간 동안에, 해당 발행인은 증권회사와 지도계약(轉導契約)에 대한 서명을 함으로써, 증권회사는 해당 발행인의 추천 증권회사가 된다.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는 추천한 발행인의 흥궤주식을 그레타이 매매를 위하여 상장된 기간 동안에 해당 발행인의 지도 추천 증권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3일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본 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다(동 심사준칙 제15조 제1, 2항). 만약 앞에서 언급한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임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가 전항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sup>34)</sup> 또한 변경 시 신임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는 발행인의 그레타이 매매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시의 발행인의 그레타이 매매 주식 총수의 1%가 50만주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50만주 이상만 보유하면 충분하다(동 심사준칙 제15조 제3항). 만약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가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신임 주관사 지도 증권회사의 지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흥궤주식이 그레타이 매매를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후부터 상계의 신청<sup>35)</sup>을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 3. 흥궤주식의 상장 절차

발행인이 처음으로 흥궤주식을 그레타이 센터에서 매매를 위하여 상장 신청을 하는 경우

33) 동 심사준칙의 부표(附表) 1의 1의 양식인 흥궤회사에 대한 주관사 지도 추천증권상의 년 월 재무업무중대사건검사표(主辦輔導推薦證券商對興櫃公司年月財務業務重大事件檢查表)를 참조.

34)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에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임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에 의해 발행인을 지도하게 된다. 또한 해당 발행인은 흥궤주식 그레타이 매매의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 이동일부터 만 6개월 후로 개정하여 그레타이 매매 시장 상장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4항).

35) 우리나라 코스닥의 등록에 해당한다.

에는 홍콩주식에 대한 그레타이 매매 신청서<sup>36)</sup>에 기입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본 센터에 그 신청서와 더불어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16조). 만약 외국발행인이라면 본 센터에서 그레타이 매매를 위하여 보통주식의 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또는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륙지역(중국 본토)의 인민,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구, 혹은 지배권자, 외국발행인이 특별 안건에 대한 허가신청서(專案許可申請書)<sup>37)</sup>를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 서면(檢附書案)을 그레타이 매매 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 센터는 첨부 서면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의견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관기관은 그 특별 안건에 대한 신청안의 심사의견을 보고받은 후, 비로소 그레타이 매매를 위하여 본 센터에 그 보통주식의 상장을 신청하게 된다. 외국발행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회답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매매 센터에 그레타이 매매를 위하여 보통주식의 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레타이 매매 센터에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16-1조).

본 센터는 홍콩주식 그레타이 매매 신청서를 수리한 후, 「발행인에 의한 홍콩주식 신청의 신청서류 기록표」(發行人申請興櫃股票申請書件記錄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에 따라 그레타이 매매 상장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서류에 대해 신청서류의 수취일부터 3 영업일 내에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된다. 즉, ① 국내의 발행인은 동의서를 발행하고, 시장에 그레타이 매매 개시일을 공고하며, 그 개황 자료를 본 센터의 웹 사이트에 적어도 5 영업일 동안 공시하여야 하며, ② 외국 발행인의 경우에는 홍콩주식 상장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하고, 발행인이 주식 공개 발행의 효력 발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후에, 동의서의 발행과 함께 시장에 그레타이 매매 개시일을 공고하고, 그 개황 자료를 본 센터의 웹 사이트에 적어도 5 영업일 동안 공시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17조 제1항). 위의 회사 개황 자료에는, 주식 번호, 회사명, 이사장(董事長), 총경리(總經理),<sup>38)</sup> 자본금, 자본총액, 주요한 영업 항목, 주요한 제품, 최근 5년 간의 약식 손익계산서, 최근 5년 간의 약식

36) 동 심사준칙 附件一或附件一之一 참조.

37) 위의 심사준칙 附件一之二 참조.

38) 총경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중국 회사법상 회사의 경영권은 이사회에 있고, 경리의 임명 관리권도 회사경영권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총경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고급관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거나, 이러한 총경리의 회사법상의 지위는 이사회에 위임을 받아서 이사회에 지도하에 회사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설적 보조업무 집행기관이라는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憑曉光, 「公司法」(中國和平出版社, 1994), 140頁; 石少俠, 「公司法」(吉林人民出版社, 1994), 249頁; 이정표, 「중국회사법」(박영사, 2008), 139-140쪽 주 59, 60 재인용.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sup>39)</sup> 발행인의 주식에 대한 그레타이 매매 상장이 본 센터에 의해 허가되었을 경우, 발행인은 본 센터와 홍콩주식 그레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센터는 홍콩주식 그레타이 매매계약을 매월마다 정리해 주무기관의 심사를 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만약 발행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불완전하다면, 본 센터는 보충해야 할 자료를 소명하고 소정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보충하도록 발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동 준칙 제18조 제1항). 이에 따라 발행인이 본 센터가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서류를 보충하면, 동 서류의 담당자는 위에서 언급한 동 준칙 제17조에 규정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재차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서류를 보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건의 관련 담당자는 발행인의 주식의 홍콩 등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즉시 작성하여 내부 승인 절차에 의한 승인을 취득한 후 해당 신청 안건을 각하하게 된다(동조 제2항).

또한 본 센터는 발행인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레타이 매매의 상장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에 의하여 제출된 「체크리스트(檢査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식의 홍콩주식의 상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취득한 후 해당 안건을 각하하게 된다(동 준칙 제18조).

더불어 안건의 담당자는 예비 조사를 위하여 홍콩 주식의 그레타이 매매 신청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 및 관련 서류를 하나의 통계 폴더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20조). 발행인은 본 센터로부터 본 준칙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내에 ① 그레타이 매매 비용의 지급, ② 기타 본 센터가 지정한 필요한 서류를 본 센터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21조).

만약 국내의 발행인이 보통주의 신주를 재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주주에게 교부한 날로부터 그레타이 매매를 개시한다. 국내의 발행인은 신주 그레타이 매매의 2 영업일 전에 홍콩주식의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본 센터에 제출하고, 그레타이 매매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22조 제1항). 나아가 국내의 발행인은, 모집에 의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특별주(附認股權特別股), 전환 가능 특별주(可轉換特別股), 신주인수권부 사채(附認股權公司債)를 인수할 것인지 또는 그레타이 상장이 끝난 보

39) 중국 상장회사 이사회의 평균 구성원은 9.42명이고, 이 중에서 2.72명이 경리층(총경리, 부총경리, 경리)의 직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 구성원 전체의 약 28.83%에 해당된다[李建僞, 「公司制度 公司治理與公司管理」(人民法院出版社, 2005), 170頁; 이정표, 앞의 책, 141쪽 주 64 재인용].

통주와 동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유가증권 전환 신고서에 의해 본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위 2항에서 국내의 발행인에 의한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 신고서 또는 유가증권 전환 신고서는 홍콩주식 그레타이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동조 제3항).

이와는 달리 외국 발행인이 대만 국내에서 현금 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 발행인은 홍콩주식의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 신청서 및 그 관련 서류를 본 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본 센터는 그레타이 매매에 동의하는 증명서류를 발행해 주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명서류가 효력을 발생한 후 신주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날로부터 그레타이 매매가 개시한다. 외국 발행인은 신주 그레타이 매매 개시전 10 영업일에 홍콩주식의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 신고서 및 그 관련 서류를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레타이 매매와 관련되는 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23조 제1항). 위의 외국 발행인의 증자 신주 그레타이 매매 신청 내지 신고서는 홍콩주식 그레타이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동조 제2항).

만약 외국 발행인이 무상 배당 주식에 속하는 보통주의 신주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그레타이 매매의 10 영업일 전에 홍콩주식의 증자를 위한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 신고서 및 그 관련 서류를 본 센터에 제출하고 그레타이 매매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레타이 매매의 개시는 신주를 주주에게 교부한 날부터이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 발행인의 증자 신주 그레타이 매매 신고는 홍콩주식 그레타이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

마지막으로 본 센터는 발행인의 신주 그레타이 매매 신고 시에 관련 서류를 조사한 후에 시장 공고를 한다(동 준칙 제25조).

#### 4. 홍콩주식의 거래 개시 및 정보 공시

##### 1) 주식사무의 처리

홍콩주식의 발행인은 본 준칙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 2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1, 2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 사무 대리기구 또는 주식 사무 기관의 사무소 및 담당자 이름, 주권 명의개서시의 날인용 인감 양식을 본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26조 제1항). 발행인은 위의 주식 사무를 주무기관이 공포한 「공개발행 주식회사 주

식 사무 처리 준칙」(公開發行股票公司股務處理準則)의 규정<sup>40)</sup>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발행인의 등기소재지의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동조 제2항). 발행인은 증자에 의한 주식 또는 자본감소 후에 교환되는 신주와 관련하여 그레타이 매매를 신청할 때에는 주권이 전자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등록된 증명서류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이 전자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는 외국 발행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 2) 기재사항의 변경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발행인은 회사명, 발행주식수 또는 그 외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 주식을 교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한 후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식변경 내용 신고서(股票內容變更申告書)<sup>41)</sup> 및 그 관련서류를 본 센터에 제출하고 본 센터에 의하여 주식발행 신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27조 제1항). 위의 관련서류에 있어서 주식재발행작업계획서(換股作業計畫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즉, ① 구주의 명의개서 정지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유가증권이 전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정지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의 기간은 최저 5일로 한다. 다만, 회사법 제168조의 1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 센터에 의해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자본감소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 신규(新舊) 주식의 권리 의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주의 시장에서의 매매 정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은 구주의 명의개서 정지일 전의 2영업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신주 재발행 기준일에 대해 회사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구주의 명의개서 정지일부터 제5일로 한다. ④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 개시일과 구주의 그레타이 매매 정지일은 같은 날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나아가 본 센터는 주식 재발행 작업 신고 안건을 수리하여 제출된 서류 내용이 규정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본 준칙 제29조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의 정지 작업을 실시하도록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만약 발행인이 회사명을 변경했을 경우, 해당 변경 신청의 허가일부부터 3년 내에, 발행한 모든 유가증권 및 기타 공개해야 할 정보의 신규 회사 명칭 대조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명 변경 후 연속하여 3개

40) <http://www.selaw.com.tw/Scripts/Query4B.asp?FullDoc=所有條文&Lcode=G0100007>, 2013. 6. 25.

41) 동 심사준칙 附件五或附件五之一을 참조.

월 동안 본 센터에 소정의 인터넷 정보 신고 시스템에 중요 정보로서 매일 입력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 3) 자본감소에 의한 주식교환을 한 경우

발행인이 자본감소에 의해 주식교환(因減資而換發股票)을 한 경우에는 주식 재발행 작업 계획서(換股作業計畫書)에 「재발행 계획에 대해 본 센터로부터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주 재발행 작업을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 이후 재발행 계획에 근거하여 확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작업 지연 내지 이상(異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또한 부분을 주관사 지도 추천 증권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28조 제1항). 반면 국내의 발행인은 자본감소에 의한 재발행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의 3영업일 전에, 외국 발행인은 10영업일 전에, 홍콩주식의 자본감소에 의한 재발행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 신고서 및 그 관련 서류를 본 센터에 송부함과 동시에 주주에게 교부한 날로부터 그레타이 매매를 개시한다(동조 제2항). 다만, 발행인은 재발행 주식수가 그레타이 매매 주식 총수의 30%에 이르는 경우 또는 그레타이 매매 주식 총수의 30%에 이르지 않지만 신주 그레타이 매매 개시일로부터 재발행 사무를 수시로 처리하고, 또한 구주를 취득한 날에 결제를 위하여 신주를 재발행하는 것을 서면으로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 개시 기일을 정하여 본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만약 발행인이 위의 승낙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그레타이 매매 개시 기일은 신주의 재발행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신주 그레타이 매매가 개시된 후 발행인은 재발행 사무를 수시로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구주를 취득한 날에 결제를 위한 신주를 재발행해야 한다(동조 제4항).

### 4)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하는 경우

발행인은 회사법 제165조 또는 등기소재지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에 의한 명의개서 정지일의 12영업일 이전에 본 센터의 소정 인터넷 정보 신고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29조 제1항). 나아가 발행인은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이미 언급한 제1항의 소정 기일에 주주 총회의 개최 기일, 사유를 공고한 후, 적어도 주주총회의 개최일의 40일 이전에 주식 이자, 이익 금액 또는 권리 분배의 내용을 본 센터의 소정 인터넷 정보 신고 시스템에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

항). 또한 발행인은 적어도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일의 12영업일 이전에 주식 이자 및 이익 또는 그 외의 이익을 분배하는 기준일을 정하고, 본 센터의 소정 인터넷 정보 신고 시스템에 대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흥계회사는 상기의 공고 사항을 사후로 변경했을 경우 또는 본 센터의 소정 기한 내에 공고를 하지 않거나, 거래와 관련되는 분쟁 및 매매 당사자의 일방에 손해가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동조 제4항).

### 5) 재무제표의 신고

국내의 발행인은 각 회계년도 종료 후의 4개월 내에 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종료한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sup>42)</sup> 2부를 서면으로 본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sup>43)</sup> 또한 각 회계연도의 반기가 종료한 후 45일 이내에 회계사에 의한 감사가 끝난 반기 개별 재무제표 및 반기 연결 재무제표와 본 센터 소정의 인터넷 정보 신고시스템에 공고한 사항을 다운로드한 자료 2부를 서면으로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 재무보고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연결재무제표 2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 발행인이 증권업, 선물업, 금융업 및 보험업자인 경우, 회계사에 의하여 감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한 재무보고서 2부를 제출하면 된다(동 준칙 제30조 제1항).

만약 국내의 발행인이 주식의 그레타이 매매시장에 상장 또는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 자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그레타이 상장까지의 기간 내에, 그레타이 매매시장의 상장 내지 거래소에 상장하는 회사에 따라 주무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회계사에 의한 감사

42) 연결재무제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회사가 대상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상회사(종속회사)와 투자회사(지배회사)를 단일의 경제적 동일체로 가정하고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강선민·한봉희·황인태, 「IFRS적용이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연구원, 2010), 29-30쪽; 권재열, “K-IFRS의 도입과 규제의 역설 비외감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제13권 2호)」(증권법학회, 2012), 125-126쪽).

43) 우리나라 구(舊) 상법에서 재무제표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상법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삭제하고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대체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계학의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식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이에 근거 상법 개정안에서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을 포함시키는 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상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상법은 대규모회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회사까지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법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을 명시하고 그 외의 것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안을 채택하였다[법무부, 「상법개정 특별위원회 회의록(회사편)」, 2006, 276-279쪽].



가 종료된 제 1/4분기 및 제3/4분기의 재무보고서 2부를 서면으로 본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또는 신청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다(동조 제2항).

외국 발행인은 각 회계연도의 종료 후의 4개월 내에 서면으로 회계사에 의한 감사가 종료한 연도재무보고서 2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2/4분기가 종료한 후 45일 내에 서면으로 본 센터에 회계사가 감사를 종료한 제2/4분기 재무보고서 2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대만의 증권발행인 재무보고 작성 준칙(證券發行人財務報告編製準則)<sup>44)</sup> 및 일반 공인 회계원칙 작성년도 재무보고(公認會計原則編製年度財務報告)를 채택한 자는 양도 국가에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sup>45)</sup> 또한 개별재무제표를 통한 주식배당을 하려는 관련 기초자는 개별재무제표를 신고하는 것 이외의 별도의 공고도 하여야 한다. 해당 편제준칙 제7조 제1항의 해당년도 개별재무제표 편제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동 준칙 제31조 제1항).

외국발행인이 주식의 그레타이 매매 시장의 상장 또는 거래소에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그레타이 등록까지의 기간 내에 그레타이 매매 시장에서의 상장(거래소에의 상장) 회사와 마찬가지로 주무기관의 소정 기간 내에 회계사가 감사를 종료한 제1/4분기 및 제3/4분기의 연결재무제표 및 본 센터의 소정 인터넷 정보신고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공고사항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경우 또는 신청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각각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동조 제2항).

## 6) 홍콩주식의 매매자료의 제공 요구

본 센터는 규정 또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기한 내에 홍콩주식의 매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발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동 준칙 제32조 제1항). 발행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센터에 제공한 제표 또는 자료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동조 제2항). 나아가 발행인은 일정한 정보를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44) <http://www.selaw.com.tw/scripts/NewsDetail.asp?no=G0100205>, 2013. 6. 27.

45) 개별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반면 별도재무제표란 지배기업이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연결재무제표 작성실무」(금융감독원, 2009. 12), 2쪽].

본 센터 소정 인터넷 정보 신고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동 준칙 제33조).<sup>46)</sup>

또한 동 심사준칙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sup>47)</sup>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사실 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의 거래시간 개시 전에 해당 정보 내용을 본 센터가 지정하는 인터넷 정보 신고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입력 전에 발표된 신문기사(新聞稿)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사를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 7) 기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발행인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정보<sup>48)</sup>를 공포할 때에 본 센터가 지정하는 소정의 인터넷 정보 신고 시스템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사실의 발생 경위, 원인, 회사의 재무 및 업무에 대한 영향, 예상 영향액 및 대응 조치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36조 제1항). 정보의 정확성 및 보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은 중대한 정보를 공포하기 전에는 일체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발행인은 중대한 정보를 공포함과 동시에 그 부분을 추천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주관사 증권회사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추천 증권회사는 전과 매체에 의한 발행인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하며 허위의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중대한 정보를 공포하도록 발행인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발행인에게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정보를 공포하지 않는 경우, 주관사 증권회사는 즉시 본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나아가 본 센터는 중대 정보의 명시된 즉시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무 또는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을 발행인에게 요청하고 필요 시에 그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발행인은 신고한 정보에 착오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발견을 한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 통지를 받은 후 정확한 자료를 즉시 입력하여 수정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발행인이 신고한 정보에 대하여 본 센터는 관련 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대외에 공포하거나 또는 주무기관에 조사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발행인이 신고한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본 준칙에 따라 취급하는 것 이외에 발행인이 관련법 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동조 제2항).

46)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 준칙 제33조 참조.

47) 구체적인 내용은 동 심사준칙 제34조 제1항 참조.

48) '중대정보'에 대하여는 동 심사준칙 제35조 제1항 참조.

## 5. 그레타이 매매의 정지 및 중지

발행인은 아래에서 열거한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그 주식의 그레타이 매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동 준칙 제38조 제1항).

1. 주관사 증권회사가 없는 경우
2. 단지 한 개의 추천 증권회사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36조에 규정되고 있는 기간 내에 연도 또는 반기 재무제표를 공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른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는 경우
5. 본 심사준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 사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본 센터의 소정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는 경우
6. 회사법 제282조에 열거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고, 법원에 의하여 회사법 제2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의 금지의 재정을 받은 경우
7. 외국 발행인이 현재 대만 국내에 거주 또는 등기하고 있는 소송 및 비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
8. 제출된 승낙 사항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
9. 외국 발행인이 공고 신고한 연결 재무제표가 본 준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10. 본 센터 또는 본 센터가 지정한 회계사 또는 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회피 또는 거절하거나 또는 사태가 심각한 경우
11. 기타 본 센터가 그레타이 매매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한 발행인은 아래의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그 주식의 그레타이 매매를 중지할 수 있다(동 준칙 제40조 제1항).

1. 해당 주식이 본 센터의 그레타이 매매시장에 상장되거나 또는 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2. 본 준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그레타이 매매를 정지한 기간이 3개월을 넘어 그 거래 정지와 관련되는 원인이 아직 소멸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추천 증권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파산 선고가 확정된 경우
5. 법원에 의하여 회사 갱생이 허가되거나 또는 회사법 제285조의 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회사 갱생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
6. 국내의 발행인에 대해 회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항, 제315조 제1항 제1호 - 제7호 및 제397조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 또는 기타 원인으로 또는 외국 발행인이 등기소재지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주무기관에 의하여 회사 등기의 각하 또는 해산 지시를 받은 경우
7. 회사법 제251조 또는 제271조에 규정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대만 또는 등기소재지의 관련 주무기관에 의하여 주식 또는 사채 발행의 신청이 각하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8. 발행인의 신청 또는 본 센터의 지시에 의해 해당 주식에 대한 그레타이 매매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6. 위법의 처리

발행인은 본 준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본 센터는 NTD 1만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외국발행인이 본 준칙 제33조의 1의 규정 위반 또는 발행인이 본 준칙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 센터는 매 1개의 안건마다 NTD 3만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발행인이 만약 위 제1항, 제2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내에 본 위반 건수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또는 개별 안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또는 주주의 권익 내지 주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본 센터는 NTD 3만 내지 100만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앞의 제3항의 정황에 따라 발행인이 정보 공시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본 센터로부터 통지를 접수한 후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그 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센터는 매일 NTD 1만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처리 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개별 안건이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센터는 본 준칙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하여 그레타이 매매를 정지한다(동조 제4항).

발행인은 본 준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약금에 처한 사정에 대하여 본 센터는 공개정보 관측소에 공시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또한 추천 증권회사가 본 준칙 제36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본 센터는 NTD 1만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 준칙 제48조).

본장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본 센터의 통지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본 센터에 대하여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동 준칙 제49조).

## IV. 맺는 말

이상으로 대만의 「그레타이 매매 센터 증권회사 영업소 홍콩주식 매매 심사준칙」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7월 1일부터 약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넥스 시장이 개장되었다. 개장 당시에는 21개 종목 중에서 11개 종목만이 거래가 성사되었고 시가총액은 현재 2067억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3년 7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향후 코넥스 시장과 관련된 법 규정의 제정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거래소 관련 규정은 이미 개정되었다. 본 주제에 대한 검토는 향후 코넥스 관련법의 제정 시

및 제정 이후 동법이 적용될 때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선민 · 한봉희 · 황인태, 「IFRS적용이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0).
- 권재열, “K-IFRS의 도입과 규제의 역설 비외감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3권 2호 (증권법학회, 2012).
- 금융감독원, 「연결재무제표 작성실무」, 2009. 12.
-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위원회 회의록(회사편)」, 2006.
- 이안초, “지정자문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가천법학」 제6권 2호 (2013. 6. 30).
- 이정표, 「중국회사법」, 박영사, 2008.
- <http://blog.daum.net/shbaik6850/16546721>, 2013. 6.30.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70109372359158&outlink=1>, 2013. 7. 1.
- <http://www.selaw.com.tw/scripts/NewsDetail.asp?no=G0100713>, 2013. 5. 15.
- [http://www.shinkim.com/upload\\_files/newsletter/SHIN&KIM\\_IPO\\_Legal\\_Update\\_201305\\_kor.pdf](http://www.shinkim.com/upload_files/newsletter/SHIN&KIM_IPO_Legal_Update_201305_kor.pdf), 2013. 6. 27.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3681>, 2013. 6. 27.
-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307020332>, 2013. 7. 10.
- <http://www.selaw.com.tw/Scripts/Query4A.asp?FullDoc=all&Fcode=G0100702>, 2013. 6. 26.
- <http://www.fsc.gov.tw/ch/>, 2013. 7. 10.
- [http://www.otc.org.tw/ch/service/sotck\\_info/comparison/market\\_comparison.php](http://www.otc.org.tw/ch/service/sotck_info/comparison/market_comparison.php), 2013. 7. 10.
- <http://www.rootlaw.com.tw/LawArticle.aspx?LawID=A040390051014300-1010824>, 2013. 7. 10.
-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Q0010001>, 2013. 5. 9.
- <http://www.selaw.com.tw/scripts/NewsDetail.asp?no=G0100035>, 2013. 5. 15.
- <http://www.selaw.com.tw/scripts/Query1B.asp?no=1G010000114-6>, 2013. 7. 10.
-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8%88%EC%9C%B5%ED%88%AC%EC%9E%90%ED%98%91%ED%9A%8C>, 2013. 7. 10.
- <http://www.csa.org.tw/>, 2013. 5. 1.
- <http://www.selaw.com.tw/Scripts/Query4B.asp?FullDoc=所有條文&Lcode=G0100801>, 2013. 3. 26.
- <http://www.laws.taipei.gov.tw/taipei/lawsystem/showmaster02.jsp?LawID=A040390051021400-20111031>, 2013. 7. 12.
- <http://www.selaw.com.tw/Scripts/Query4B.asp?FullDoc=所有條文&Lcode=G0100007>, 2013. 6. 25.
- <http://www.selaw.com.tw/scripts/NewsDetail.asp?no=G0100205>, 2013. 6. 27.